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48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서울여성플라자 일부 시설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으로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감소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 및 시설 관리·운영 등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0년 4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서울여성가족재단 추가 출연에 대해 서울특별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단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소재지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 (대방동)
 - 규모 : 지하 3층, 지하 5층(대지 6,488㎡, 연면적 22,519㎡)
 - 지원시설 : 서울여성플라자
- 관련법령
 - 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조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기금 및 출연금 등) ② 시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사업

- 여성, 가족, 보육, 돌봄 등 관련 정책 연구·개발
- 여성의 사회참여 활성화 및 경제력 강화, 문화활동 및 복지 증진 사업
- 국내·외 여성교류 및 단체활동 강화,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돌봄 지원 사업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운영·관리 등

다. 추경개요

1) 추경예산 : 460,812천원

※ 총 출연금액 : 13,859,339천원 (기정 출연금액 : 13,398,527천원 포함)

2) 추경필요성

- 서울여성가족재단이 관리하고 있는 여성플라자는 설립 이래, 시설 임대료, 대관료 등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및 시설물 관리비 등 기본 운영비용을 충당해 왔으나,
- 코로나19 확산으로 2월 25일부터 임대 시설 휴관 조치에 따라 민간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및 공용관리비 등을 감면하였음
- 또한, 휴관에 따른 이용자 감소, 대관취소 등 자체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사업이나 시설운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손실 보전금 460,812천원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음

3) 추경예산 산출 근거

- 추경 요청액 : 460,812천원

▶ 임대료 감면 등 수입손실액(1,084,872천원) - 사업축소 등 자체 세출절감액(624,060천원)

○ 임대료 감면 등 수입 손실액 : 1,084,872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시설	계	수입 손실					비고
			2월말~3월	4월	5월	6월	7월	
합계		1,084,872	287,853	211,518	125,025	230,238	230,238	
시설운영 수입	자체수입 (직영)	303,713	101,672	56,594	17,191	64,128	64,128	최근 3년 평균 대비 손실액
	임대수입 (위탁)	511,008	116,721	110,062	62,471	110,877	110,877	임대료 손실 (일할계산)
기타수입	관리비	270,151	69,460	44,862	45,363	55,233	55,233	전년 동월 관리비 기준

※ 7월 이후 2.3억원/月 (7,010천원/日) 손실 발생

○ 사업 축소 등 세출 절감액 : 624,060천원(7월말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절감예산	절감 내역	비고
합계		624,060		
시설 유지	보일러기능보강 연기	130,000	기능보강 연기, 저녹스버너 설치 (170,000천원-40,000천원)	사업 연기
	리모델링 설계 일부 축소	90,000	공간 리모델링 설계 축소(연수실만 적용) (169,257천원-79,257천원)	설계 축소
	시설물 보완 축소	74,520	시설물 보완공사, 도색, 설비교체 취소 등 필수기능 유지 외 축소	공사 축소
일반 운영	수도광열비 등 절감	200,000	휴관에 따른 수도광열비 절감액 (5월 현재 1.3억 절감)	
	시설사용료 감면	45,000	휴관에 따른 市 납부 사용료 감면 (325,197원×139일, 7월말 기준)	
기타	기타 비용 절감	84,540	대면교육, 조사평가, 채용조정, 행사운영, 회의, 간담회 등 절감 가능한 사업 연기 및 취소 등	일부 축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0년도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 양경은(☎ 2133-5038)